

[참고 : 이전지역인재의 범위]

- 이전지역인재 :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광주·전남 지역 소재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중인자

※ 광주·전남지역 소재 학교의 범위

가. 광주·전남지역 소재 학교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광주·전남 지역에 소재하는 『고등교육법』상의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『고등교육법』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광주·전남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광주·전남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『한국과학기술원법』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광주·전남지역 소재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

- (1) 광주·전남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·전남 이외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- 그 외의 이전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광주·전남 지역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광주·전남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광주·전남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광주·전남 지역인 경우

※ 이전지역인재 해당여부는 “공공기관 통합공시(알리오) 매뉴얼상 기준”에 따라 판단함